

투자위험등급:
4등급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주)는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법인전용미국회사채월지급식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법인전용미국회사채월지급식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u>미래에셋법인전용미국회사채월지급식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AG082)</u> |
|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채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1577-1640) |
| 4.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 작성 기준일 | 2013년 12월 9일 |
|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년 12월 12일 |
| 7.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
|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
|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
| 11.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 : 해당사항 없음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 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입니다. 이에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 |
|------------------------------|----|
|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4 |
| 1. 투자목적 | 4 |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4 |
| 3. 주요 투자위험 | 6 |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7 |
| 5. 운용전문인력 | 7 |
|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8 |
|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 8 |
| 1. 수수료 및 보수 | 8 |
| 2. 과세..... | 10 |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 10 |
| III. 요약 재무정보..... | 11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은 매월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번 과세이익이 산정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일반적인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과세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10. 이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는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자세한 가입자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분배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월 일정액의 분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매월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방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시의 이익분배와는 별도로 매월 단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분배금: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추정 수익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2. 분배금 지급일: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단,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분배금지급일에는 분배금지급을 유보합니다.
3. 분배기준일: 분배금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일로 합니다.

※ 분배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①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등에 최소 50% 이상 투자하면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50% 이상 투자합니다.
- ② 이 투자신탁은 미국의 투자적격 회사채(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전략 등에 따라 미국 외 지역의 채권 및 투자적격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신용평가등급 BB- 이하)에 일부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에도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요 투자대상 중에 적절한 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하기 위하여 위험조정 수익률, 변동성 등을 고려한 정량적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내용 및 분산정도, 운용 프로세스 등을 고려한 정성적 분석을 결합한 분석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대상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것에 운용역량을 집중할 예정 입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다양한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Barclays US Aggregate Corporate Index

< Barclays US Aggregate Corporate Index : Barclays가 작성하여 발표>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집합투자기구가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의 경우 파생상품투자기 발생할 수 있는 레버리지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합투자업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 구 분 | 세부내용 |
|---------|---|
| 환헤지 여부 |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
| 환헤지 방법 |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을 사용합니다. |
| 목표 헤지비율 |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 실행이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90% 이상 수준의 환헤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환헤지 장점 |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 환헤지 단점 |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

| | |
|-----------------------------------|---|
| | <p>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p> <p>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p> |
| <p>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p> | <p>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p> <p>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

※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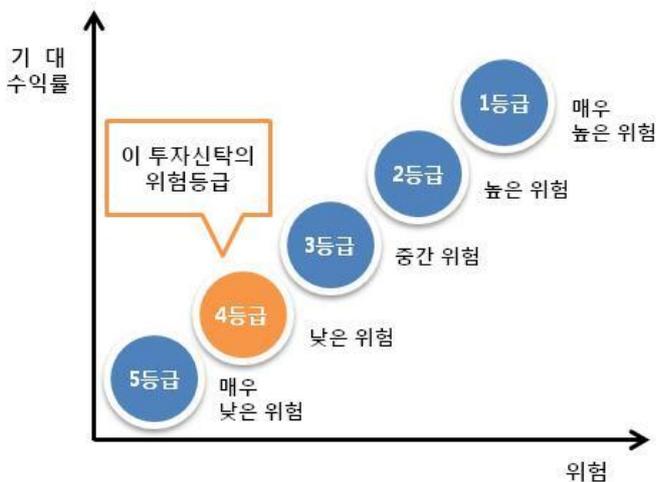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래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투자위험 | 투자위험 주요 내용 |
|-----------|---|
| 원본손실위험 | <p>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p> |
| 주요 운용위험 | <p>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 종목 발행회사 또는 집합투자증권에서 편입하고 있는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p> <p>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p> |
| 헤지위험 | <p>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p>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p>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일부 투자할 수 있으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p> |

| | |
|-----------|---|
| | 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환매제한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재간접투자 위험 | 편입하고 있는 타 집합투자증권에서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재산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각각의 개별적인 운용전략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분배형 펀드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매분기 일정 액의 분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은 금리 등 다양한 경제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아 수익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매분기 분배금 지급에 따라 투자원본이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5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출생 년도 | 직위 | 운용현황(13.09.30 기준)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수 | 운용자산 규모 | |
| 김진하 | 1974 | 본부장 | 12개 | 46,605억 | (0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 |
| | | | |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 | | | | 개수: 0 규모: 0 |

*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Global Fixed Income 운용본부” 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집합투자기구를 총

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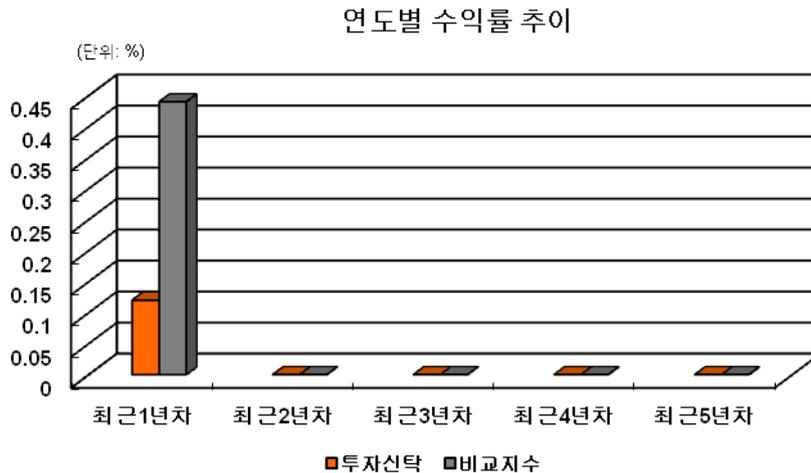
* 상기 운용전문인력이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연도 기간 | 최근1년차 13.03.21~13.11.30 | 최근2년차 | 최근3년차 | 최근4년차 | 최근5년차 |
|----------|----------------------------|-------|-------|-------|-------|
| 투자신탁 | 0.12 | - | - | - | - |
| 비교지수 | 0.44 | - | - | - | - |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비교지수는 “Barclays US Aggregate Corporate Index”이며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판매회사로부터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제한>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및 제5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1호 내지 제17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한 금전신탁은 제외)로 최소 가입금액은 200억원 이상으로 한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수수료 구분 | 수수료율 | 부과기준 |
|------------|----------|------------|
| 선취 / 후취수수료 | - | - |
| 환매수수료 | 이익금의 70% | 90일 미만 환매시 |
| 전환수수료 | - | -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비고(지급시기)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15%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
| 판매회사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02% | |
| 신탁업자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03% | |
| 일반사무관리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02% | |
| 기타비용 | 순자산총액의 연 0.02% | 사유발생시 |
| 총보수·비용 | 순자산총액의 연 0.24% | - |
|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순자산총액의 연 0.56% | - |

주1) "기타비용"이라 함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위의 기타비용 비율은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기구(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기타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 비율은 향후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는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합투자기구들의 금액가중방식으로 계산한 평균보수율을 구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계산함에 있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는 포함하되, 기타비용은 알 수 없어 여기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과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
|---------|----------------------------|
| 증권 거래비용 | - |
| 금융비용 | - |
| 발행분담금 | -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1,000원)

| 수익증권 종류 | 구분 | 투자기간 | | | |
|------------|-------------------------------------|------|-----|-----|------|
| |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투자신탁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25 | 77 | 135 | 306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57 | 180 | 314 | 705 |

위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이자, 배당 등)에 대하여 소득세 등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세제혜택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1) 기준가격의 산정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공시장소 |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2) 매입 및 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나 인터넷을 통해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오후 5시 이전 | 오후 5시 경과후 |
|----|---|--|
| 매입 | <p>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 <p>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
| 환매 |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D+9)에 환매대금을 지급</p> |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1영업일(D+10)에 환매대금을 지급</p> |

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요약 재무상태표 | | | |
|----------|---|---|----------------|
| 항 목 | - | - | 1기 ('13.09.20) |
| 운용자산 | | | 192,272 |
| 증권 | | | 170,792 |
| 파생상품 | | | 0 |
| 부동산/실물자산 | | | 0 |
| 현금 및 예치금 | | | 1,279 |
| 기타운용자산 | | | 20,200 |
| 기타자산 | | | 350 |
| 자산총계 | | | 192,622 |
| 운용부채 | | | 0 |
| 기타부채 | | | 120 |
| 부채총계 | | | 120 |
| 원본 | | | 199,979 |
| 수익조정금 | | | 20 |
| 이익잉여금 | | | 0 |
| 자본총계 | | | 194,501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 항 목 | - | - | 1기 ('13.03.21~'13.09.20) |
| 운용수익 | | | -5,245 |
| 이자수익 | | | 319 |
| 배당수익 | | | 1,168 |
| 매매/평가차익(손) | | | -6,732 |
| 기타수익 | | | 0 |
| 운용비용 | | | 253 |
| 관련회사보수 | | | 216 |
| 매매수수료 | | | 10 |
| 기타비용 | | | 26 |
| 당기순이익 | | | -5,498 |
| 매매회전율 (%) | | | 0 |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매매회전율 변동에 관한 특이사항 : 해당사항없음

* 위의 매매회전율은 이 자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매매회전율,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을 기초로 계산한 추정 매매회전율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미래에셋법인전용미국회사채월지급식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미래에셋법인전용미국회사채월지급식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재간접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고객 확인 사항 | 고객기재사항 |
|---|-------------|
|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듣고 받았음) |
|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적합함) |
|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 (제공받고 들었음) |
|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에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 (들었고 권유받았음) |

년 월 일

고객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